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30
----------	------------

제안연월일 : 2020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I. 수정이유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기한을 중앙부처와 통일되게 규정하고 공개시스템에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추가함.

II.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기한 등을 수정함(안 제4조).

III.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3개월”을 “1개월”로 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4조(공개) 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u>정책연구관리시스템</u> 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u>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u>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 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연구 또는 조사

제4조(공개) 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평가와 활용) 교육감은 각 부서와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물을 제4조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